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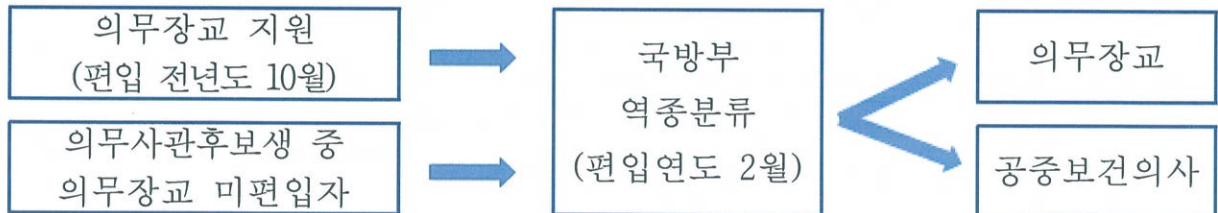
공중보건 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안내

1. 자격

- 공중보건 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
 -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 하였으나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(1호)
 -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(2호)
 -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(3호)에 해당하는 사람이 편입 할 수 있습니다.

2. 공중보건 의사 지원 절차

- 현역병입영대상자



- 사회복지무요원소집대상자 : 병무청 직접 지원 가능

3. 유의사항

- 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의무분야 현역장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 의사 편입(지원)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예시 1 > 의무분야 현역장교 선발('21년 10월 예정)시 지원하지 않을 경우 '22년도 공중보건 의사 편입 지원 불가

< 예시 2 > '20년 10월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 접수를 받지 않았으므로, 현역병입영대상자도 '21년 공중보건 의사 병무청 직접 지원 가능